

제13545호

관 보

1997. 2. 26. (수요일)

지번	지목	면적(m ²)	편입면적(m ²)	실제이용상	소 유 자			
					주	소	성	
859-4	임	93	93	임	산청 단성 사월	박	성	호
860-2	묘	37	37	묘	"			
876-9	과	130	130	과	산청 단성 길리 855	정	재	화
산143-22	임	190	190	임	"			
878-7	전	82	82	전	산청 단성 길리 310	장	순	필
산143-23	임	336	336	임	산청 단성 길리 877-3	박	종	석
(진주 대안 1204 (주)상호신용금고) (진주 상평 200-8 강점수)								
소재지 : 산청 단성 창촌								
산46-2	임	563	563	임	산청 단성 창촌 606	김	상	규
112-6	답	137	137	전	"			
111-6	전	152	152	"	산청 단성 창촌 603	김	덕	윤
110-5	"	34	34	"	산청 단성 창촌 600	김	성	호
124-4	"	4	4	"	부산진구 범천동 산44-147	김	종	근
-5	"	31	31	"	"			
128-6	"	202	202	"	산청 산청 창촌 601	김	정	근
산43-4	임	232	232	임	산청 산청 내리 1127	김	영	재
					부산 동구 좌천 68-351	김	윤	석
623-10	전	147	147	전	산청 단성 창촌 617	서	삼	만
110-4	"	32	32	"	산청 단성 창촌 600	김	중	문
118-1	"	7	7	"	산청 단성 창촌 611	김	명	룡
623-9	"	4	4	"	산청 단성 창촌 461	강	점	운
625-4	"	54	54	"	진주 봉곡 487-14	이	영	재
산40-2	임	30	30	임	산청 산청 내리 1127	김	영	재
					부산 동구 좌천 68-351	김	윤	석
산43-5	"	39	39	전	산청 산청 내리 1127	김	영	재
					부산 동구 좌천 68-351	김	윤	석
624-7	전	42	42	"	부산진구 범천동 산44-147	김	종	근
626-2	"	75	75	"	산청 단성 창촌 600	김	성	호
627-1	"	123	123	"	산청 단성 창촌 155	이	병	홍
산31-8	임	179	179	임	진주 수곡 원계 345-1		거참신씨 양간공 파 습독종친회(대표 자 신 용 선)	
-9	"		124	"	"			

◎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1997-4호

1. 항공법 제75조제1항에 의거 양양국제공항(비행장)설치하고자 같은법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226조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(토목과), 양양군, 속초시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7년2월26일

서울지방항공청장

양양국제공항설치

I. 설치목적

- 시설과 입지 여건이 열악한 속초공항의 문제점 해소
- 2000년대 영동권 항공수요 대비

재13545호

관 보

1997. 2. 26. (수요일)

○영동권 중심 거점공항 건설로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
 ○실악/금강권의 국제관광지 개발에 대비한 항공교통 수단의 기반 구축

II. 비행장의 명칭 : 양양국제공항

III. 위치
 ○표점 : 북위 38° 03' 33.86" 동경 128° 40' 13.86"
 ○표점의 표고 : 해발 73.50m

○행정구역
 ·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, 서면, 손양면, 현북면, 현남면 일대
 ·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, 도문동, 대포동 일대

IV. 사업시행자 :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

V. 시설의 개요

○부지면적 : 2,392,882㎡
 ○활주로 : 1본(2,500m × 45m)
 ○여객터미널 : 23,500㎡
 ○항공보안시설 : CAT-I

VI. 착륙대(기본표면)
 북위 38° 04' 06.94"
 동경 128° 39' 47.89"의 지점과
 북위 38° 03' 00.93"
 동경 128° 40' 55.58"의 지점과
 북위 38° 04' 00.81"
 동경 128° 39' 38.33"의 지점과
 북위 38° 02' 54.80"
 동경 128° 40' 46.02"의 지점으로
 구성되는 지표면상의 길이 2,620m 폭 300m의 직사각형 평면임.

VII. 진입구역

구분	진입구역	진입표면
15	북위 38° 04' 06.94" 동경 128° 39' 47.89"의 지점과 북위 38° 11' 10.68" 동경 128° 34' 31.42"의 지점과 북위 38° 09' 32.47" 동경 128° 31' 58.39"의 지점과 북위 38° 04' 00.81" 동경 128° 39' 38.33"의 지점으로 구성되는 사다리꼴 평면	진입표면은, 15-33 활주로 기본표면의 각각 짧은 변에서 비행장 외측상방향으 로 3,000m까지는 50분의 1구배로 3,000 m부터 15,000m까지는 40분의 1구배로 진입구역 범위내에서 구성하는 표면임.
33	북위 38° 03' 00.93" 동경 128° 40' 55.58"의 지점과 북위 37° 57' 28.67" 동경 128° 48' 34.17"의 지점과 북위 37° 55' 50.76" 동경 128° 46' 01.29"의 지점과 북위 38° 02' 54.80" 동경 128° 40' 46.02"의 지점과 구성되는 사다리꼴 평면	착륙대 단면표고는 15방향 70.25m 33방 향 69.25m임

VIII. 수평표면

북위 38° 04' 03.87"
 동경 128° 39' 43.11"의 지점과
 북위 38° 02' 57.86"
 동경 128° 40' 50.80"의 지점을
 각각 변경 3,500m의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
 루어진 표면으로서 해발고도 115.25m의 수평
 한 평면

IX. 원주표면

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(해발고도 115.25m)으
 로부터 외측상방 20분의 1경사도와 1,100m수
 평거리(해발고도 170.25m)까지 연장한 표면

X. 전이표면

기본표면의 긴 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변에서
 우측상방 7분의 1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

해발고도 115.25m까지의 표면

XI. 항공보안시설

○항공보안 무선시설
 · 활주로 33방향
 - LLZ/DME 시설 : 1개소
 - G.P시설 : 1개소
 - M.M시설 : 1개소
 - 시정계 시설 : 1개소
 - 풍향 풍속계 시설 : 1개소
 - 운고계 시설 : 1개소
 · 활주로 15방향
 - LLZ/DME 시설 : 1개소
 - 시정계 : 1개소
 - 풍향 풍속계 : 1개소
 - 운고계 : 1개소

제13545호

관 보

1997. 2. 26. (수요일)

· 기 타
 - VOR/DME 시설 : 1개소
 - 관제 통신 시설 수신소 시설 : 1개소
 - 관제 통신 시설 송신소 시설 : 1개소
 - LLWAS 잡지 장치 : 6개소

○ 항공 등화 시설

· 활주로 33방향
 - 활주로 등 : 1식
 - 활주로 중심선 등 : 1식
 - 활주로 종, 말단 등 : 1식
 - 진입등(ALSIF-1) : 1식
 - 진입각 지시등(PAPI) : 1식
 - 활주로 거리등 : 1식
 - 풍향등 : 1식

· 활주로 15방향
 - 활주로 등 : 1식
 - 활주로 중심선 등 : 1식
 - 활주로 종, 말단 등 : 1식
 - 진입등(SSALF) : 1식
 - 진입각 지시등(PAPI) : 1식
 - 활주로 거리등 : 1식
 - 활주로 말단 식별등 : 1식
 - 풍향등 : 1식

· 기 타
 - 유도등 : 1식
 - 탑승교 유도점현등 : 1식

- 비행장 등대 : 1식
 - 착륙방향지시등 : 1식
 - 유도안내 표시등 : 1식
 - 계류장 등 : 1식

XII. 포장강도
 ○ 활주로 : PCN 76/F/C/X/T
 ○ 계류장 : PCN 74/R/C/X/T

XIII. 공용개시일 : 2000년 3월 1일

XIV. 기타 참고사항
 ○ 항공용어 항공법 제2조 참조
 ○ 관련기관 :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
 ○ 진입표면, 수평표면, 원추표면 및 전이표면 등의 상부로 돌출되는 장애시설들은 항공법 제82조에 의거 설치가 제한됨.(단, 같은법 시행규칙 제246조에 의한 물건제한의 특례가 있음을 참고)
 ○ 장애여부는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토목과(☎02-664-5074, 660-2174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○ 인천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1997-36호
 선박국적(선적)증서무효
 다음의 선박국적(선적)증서는 분실되었기에 그 무효임을 고시합니다.
 1997년 2월 26일
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

증서의종류	선박번호	선명	총톤수	소유자 및 주소	무효증서 교부번호	교부일자
선적증서	ICC-910512	동강2호	4.13	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-2	96-53	'96.12.3.

보훈환경개발(주)

○ 목포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1997-3호
 목포지방해운항만청 관내 죽항등대 무선표지국(레이콘)이 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

고시합니다.
 1997년 2월 26일
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

무선국명	위	치	표지부호	전파형식	주파수	공중선 전력(W)	통상방위 측정구역	복구년월일
죽항등대	N 34°40'39"		Y	2M10L1D	9,375 9,410	0.56	10마일	'97. 2.19.
(무지향성)	E125°12'15"		(- - - -)		9,415 9,445MHz			

(RACON)

○ 국립기술품질원고시제1997-7호
 한국산업규격개정및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,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 및 폐지된 한국산업규격

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 1997년 2월 26일
 국립기술품질원장